

제 1997 - 48호	다단계관택업자의등록사항변경	40
제 1997 - 57호	다단계관택업자의등록사항변경	40
제 1997 - 58호	다단계관택업자의등록사항변경	40
제 1997 - 61호	다단계관택업자의등록사항변경	41
제 1997 - 65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완료	41

● 구 고 시

제 1997 - 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	42
제 1997 - 1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동대문)	42
제 1997 - 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동)	43
제 1997 - 6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발)실시계획변경인가(도봉)	45
제 1997 - 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은평)	49
제 1997 - 6호	도시계획사업(학교,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양천)	52
제 1997 - 1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52
제 1997 - 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구로)	54
제 1997 - 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동작)	55
제 1997 - 14호	주택개발분동제3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동작)	55
제 1997 - 14호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내성곽지구)실시계획인가(관악)	56
제 1997 - 15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철사)실시계획인가(관악)	58
제 1997 - 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강동)	60

● 구 공 고

제 1997 - 53호	건설업양도인가(마포)	60
제 1997 - 58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실시계획공람(마포)	61
제 1997 - 2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양천)	63
제 1997 - 3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구로)	63
제 1997 - 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구로)	64
제 1997 - 47호	도시계획결정(변경)을위한공람(서초)	68
제 1997 - 4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자진방납)(서초)	69

● 사업소고시

제 1997 - 15호	학원검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69
제 1997 - 16호	학원검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70

● 인사발령

규 칙

서울특별시회정은영상회의공개조례시행규칙을 이같이 공포한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2803호

서울특별시회정은영상회의공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회정은영상회의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시기) 서울특별시 회정운영상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관직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이하 "예산현황 등"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재시달로부터 2월 이내에 공개한다.
2.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이하 "결산계황 등"이라 한다)은 의회의 결 산승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개한다.
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장 이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이하 "인수 받은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은 인수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3조(공개서식) 예산현황 등의 공개는 별 지 제1호서식, 결산계황 등의 공개는 별 지 제2호서식,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산·결산 또는 사무인제인수 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제4조(공개 주관부서의 지정 등) 회정운영 상황의 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항과 같다.

1. 예산현황 등의 공개: 예산상황담당관
2. 결산계황 등의 공개: 회계부장
3.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사무 과장

상 공개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규 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사항의 특성에로 인하여 공개하는 전년도 회계연도에 공 관 시보에 공개하는 시점 이전 업무 종료 시점의 시정상황자료상 부 공개주관부서에 비치되어 식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5조(공개자료의 제출) 제3조제1항 및 2 항의 공개 주관부서가 회정은영상회의 공개 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항 목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적용례) 1997년도 예산현황 등의 공개 시기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로 한다.

(별첨 제1호 시책)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년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
- 2.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조사
 - 가. 예산,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나. 일반회계 예산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장·관·항						

※ 장·관·항은 예산편성지침의 세입구조임.

(2)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합계						
장·관·항						

※ 장·관·항은 예산편성지침의 세출구조임.

다. 부채보조 예산
 ※ 일반회계 예산지출을 의지 부채보조예산의 투입된 예산액 수반후의 차입액.

라. 주요 사업조서
 ※ 당해연도 예산개요에 의거 작성함.

3. 주민부담 지방채 예정액

지방채 총액액	인	구	주민(인)담 부담 지방채 예정액
백만원		원	천원

4. 지방채 등 조부금의 조현
 가. 부채조현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선	차입 이율 (%)	저차기간/ 상환기간	전년말할금 잔액 (1)	당해연도보체		상환연도할금 잔액 산출 ④=(1)+②-③	증감 ⑤=④-(1)
					발행(2)	상환(3)		
합 계								
일반회계								
사업영								
특별회계								
사업영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영	채무부담행위 승인액	상환연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5. 기금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전 연 도 운용계획 (1)	당해연도 운용계획					증 감 (2)-(1)
		합계(2)	사업비	차입금상환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합 계							
○○기금							

다. 특별회계 예산

※ 일반회계 예산삭감액의 10% 특별회계로 예산 삭감액 구별액으로 작성함.

3. 주민부담 지방채액

지방채액	연	구	주민1인당 부담 지방채액
백만원	단	명	천원

4.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가.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선	차입	이율	적체기간	잔액	당회상환계획			상환연도	총상환액
							발행 1	상환 2	상환 3		
		연도	(중)	상환기간	잔액 1	발행 2	상환 3	1=1-2-3			
합	계										
일반회계											
사업회계											
특별회계											
○○사업회계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	승인일자
				승인액	총액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5. 기금운용계좌

(단위: 백만원)

구	분	잔	당회연도 증감액			현재액
			현재액(1)	계(2)=(3)-(4)	수납액(3)	
합	계					(1)+(2)
○○기금						

6. 민수주택의 수급 및 현황					
구	별	전년도 말 주택 수	당도연도 증가액		당도연도 말 주택 수
			증	감	
합	계				
읍	읍				
	읍				
	읍				
군	군				
	군				

(단위: 호)

7. 공공주택의 수급 및 현황						
구	별	전년도 말 보유 현황	당도연도 증가			당도연도 말 보유 현황
			총	공	민	
			소	구	관	
			계	관	리	
				관	리	
				관	리	
				관	리	
합	수					
	량					
읍	수					
	량					
군	수					
	량					

(단위: 건)

8. 공기업 운영상황

가. 사업보고서 개황

나. 결산총괄

※ 결산서에 의거 작성함.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서울특별시신입시장의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공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시장이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자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도		지		전		용		기	타
	별	지	면	국	동	국	수	상		
합										
소										
공공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잠재재산										

2. 채권·채무현황

가. 채권현황

(단위: 백만원)

채권 관리구분	채권종류	채권현재액	목적 또는 사유(조건)
계			

나. 채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차입선	차입 액	이율 (%)	거차기간/ 상환기간	전년발행금 잔액 (1)	당해연도실적		의상환 금 잔액 (4)=(1)+(2)-(3)	주관 부서
						발행(2)	상환(3)		
합계									
일반회계									
사업명									
특별회계									
사업명									

3. 수입·출입자산현황 가. 자산자산현황 (단위: 백만원)							
원	내	수	수	과	내	미	
보	외	입	입	오	내	수	
유	유	금	금	차	외	입	
형	형	회	회	이	유	금	
계	계	계	계	계	계	계	
나. 차입자산현황 (단위: 백만원)							
원	내	수	지	관	비	고	
보	외	입	출	공	고	고	
유	유	금	금	공	고	고	
형	형	회	회	공	고	고	
계	계	계	계	공	고	고	
4. 세입세출의 현금수지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지	관	비	고	
합	계	입	출	공	고	고	
5. 세입세출의 유가증권수불 현재							
권	수		불		관		보
	종	입	출	공	관	관	
별	대	금	대	금	대	금	장
계	수	액	수	액	수	액	소
합	계						
채	권						
주	식						
기	타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준칙가 개정 공포(97. 1. 15)일 때 따라 조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사항은

- 상당기에 공개하는 당해연도 예산결산 등 예산결산보고서작성업무의 실적의 내용.
- 상당기에 공개하는 결산보고서작성 업무 등을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사무에 관한 사항.
- 상당의 결산, 실적보고 등을 통한 인계인수사항은 인계인수 업무에 관한 하위일 공개하도록 함(제2조).

나. 당해연도 예산현황 등, 전년도 결산결산 등,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사항을 정함(제3조).

다. 공개주관부서의 경우

- 당해연도 예산현황 등은 예산총괄담당관.
- 전년도 결산결산 등은 회계과장.
-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은 총무과장으로 지정함(제4조).

라. 공개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함(제5조).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작업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조 순

●서울특별시규칙제2804호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작업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본부작업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일제교차로·고가도로 등 보수계획의 수립·시행 및 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 (별표 1) 건설안전관리본부 사무분장포의 시설관리부 1·2·3담당관 분장사무의 1호 중 "터널"을 "2개구에 걸친 터널"로 한다.

별표 2 중 "사·상·국·부"건설관리사업소 사무분장포의 도로보수과 도로보수1·2과를 분장사무 중 제1호를 삭제하고, 도로조명제한 분장사무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 (별표 3) 상등·강식건설관리사업소 사무분장포의 도로보수과를 분장사무 중 제7호를 삭제하고, 도로조명제한 분장사무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병원별 진료과목의 특수병원의 병원관 중 "정신병원"을 "온정병원"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97. 1. 15, 조례 제3356호)으로 2개구에 걸친 터널의 관리업무가 자치구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 및 건설관리사업소 도로보수科的 사무분장에 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 업무를 분장함(제2029호4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나. 시립 "정신병원"의 명칭을 "유형병원"으로 변경함(부칙 제4항).
다. 서울특별시립병원실시조례개정(97. 1. 15 조례 제337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함
과 이에 준함한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805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의 7급란 정원 "677"을 "678"로, 정원내용중 건축직 "23"을 "24"로 하고, 기능직란 정원 "482"를 "481"로, 정원내용 중 8등급 "27"을 "26"으로, 운전원 "6"을 "5"로, 9등급중 통신원 "7"을 "8"로, 운전원 "33"을 "32"로, 위생원 "21(사역 21)"을 "20(사역 20)"으로, 조무원 "1(검수표 1)"을 "2(검수표 2)"로 하며, 10등급중 통신원 "9"를 "14"로, 운전원 "37"을 "32"로, 위생원 "67(사역 67)"을 "61(사역 61)"로, 방호원 "24"를 "30"으로 한다.

(별표 2-1) 지방공무원교육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134"를 "132"로 하고, 기능직란 정원 "69"를 "67"로, 정원내용 중 9등급 "20"을 "18"로 하며, "교원인 2"를

삭제한다.

(별표 3-1) 상수도사업본부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2,880"을 "2,875"로 하고, 별정직란 정원 "41"를 "42"로, 정원내용 중 8급상당 "33"을 "31"로, 공무원수선 "22"를 "20"으로 한다.

(별표 3-3)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315"를 "313"으로 하고, 기능직란 정원 "237"을 "235"로, 정원내용 중 8등급 "18"을 "17"로, "교원인 1"을 삭제하며, 10등급 "126"을 "125"로, "교원인 1"을 삭제한다.

(별표 3-4) 시립병원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753"을 "753"으로 하고, 기능직란 정원 "272"를 "262"로, 정원내용 중 8등급 "16"을 "15"로, "교원인 1"을 삭제하며, 9등급 "82"를 "76"으로, "교원인 6"을 삭제하고, 10등급 "166"을 "163"으로, "교원인 3"을 삭제한다.

(별표 3-6) 역양발견센터지방공무원정원표의 별정직란 정원내용 중 "6급상당 7: 운전교사 7"을 삽입하고, 7급상당 "23"을 "34"로, 운전교사 "17"을 "24"로, "영양사 2" 앞액 "기술교도사 2, 유아교사 2"를 삽입하며, 8급상당 "27"을 "9"로, 운전교사 "20"을 "6"으로, "기술교도사 2"를 삭제하고, 유아교사 "3"을 "1"로 한다.

(별표 3-8) 아동상담소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41"을 "43"으로 하고, 별정직란 정원 "19"를 "21"로, 정원내용 중 "8급상당 2: 아동복지지도원 2"를 삽입한다.

(별표 3-12) 세종문화회관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제란 정원 "181"을 "171"로 하고, 기능직란 정원 "126"을 "116"으로, 정원내용 중 9등급 "40"을 "34"로, 통신원 "3"을 "2"로, 위생원 "3(사역 3)"을 "2(사역 2)"로, 방호원 "14"를 "10"으로 하며, 10등급 "57"을 "53"으로, 통신원 "3"을 "2"로, 위생원

1(사역 1)을 삭제하고, 조무원 "8(검수포 5)"을 "6(전수포 6)"으로 한다.

(별표 3-15) 건설안전관리본부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본부의 계관 정원 "375"를 "365"로 하고, 6급관 계관 정원 "75"를 "70"으로, 정원내용 중 전기직 "8"을 "9"로 토목직 "37"을 "31"로 하며, 7급관 정원 "154"를 "149"로, 정원내용 중 기계직 "11"을 "12"로, 토목직 "84"를 "78"로 한다.

나. 건설관리사업소의 계관 정원 "581"을 "541"로, 6급관 정원 "40"을 "41"로, 정원내용 중 전기직 "6"을 "7"로 하고, 7급관 정원 "46"을 "53"으로, 정원내용 중 기계직 "2"를 "3"으로, 전기직 "4"을 "7"로, 토목직 "23"을 "26"으로 하며, 8급관 정원 "47"을 "49"로, 정원내용 중 토목직 "22"를 "24"로 하고, 기능직관 정원 "414"를 "464"로, 정원내용 중 6등급 "4"를 "5"로, "기계장 4"다음에 "전기장 1"을 삽입하면, 7등급 "74"를 "78"로, "기계장 74" 다음에 "전기장 4"를 삽입하고, 8등급 "24"를 "33"으로, "음전선 1" 다음에 "전기선 7, 위생선 2(사역 2)"를 삽입하며, 9등급 "73"을 "92"로, "기계선 30" 다음에 "전기선 14, 위생선 5(사역 5)"를 삽입하고, 10등급 "239"를 "256"으로, 전기선 "18"을 "31"로, 위생선 "6(사역 6)"을 "10(사역 10)"으로 한다.

(별표 3-18) 지하철건설본부지방공무원 정원표의 계관 정원 "565"를 "539"로 하고, 5급관 정원 "55"를 "53"으로, 정원내용 중 토목직 "34"를 "32"로 하며, 6급관 정원 "204"를 "190"으로, 정원내용 중 기계직 "29"를 "18"로, 토목직 "106"을 "96"으로, 건축직 "15"를 "13"으로 하고, 7급관 정원 "184"를 "174"로, 정원내용 중 토목직 "93"을 "86"으로, 건축직 "18"을 "16"으로, 통신기술직 "16"을 "1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현원액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서소동청사 관리인력 만 2계구에 걸친 터널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조정 등 본청과 사업소의 인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실정.

2. 주요골자

가. 서소동청사 관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청정원을 상계 조정함(별표 1-1).

※기능직 14명(운전 7, 사역 7)→일 반직 1명(건축 7급 1), 기능직 13명(통신 6, 방호 6, 조무 1)

나. 2계구에 걸친 터널의 관리업무가 차치구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소요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량 축소, 또는 기능직외분야의 인력을 감축함(별표 2-1, 별표 3-3, 별표 3-4, 별표 3-12, 별표 3-15, 별표 3-18).

※건설안전관리본부: 증원 50명(전기선 39, 위생선 11)

- 지하철건설본부, 계중문화회관, 시립병원 등 감축 50명

다. 여성발전센터 별정직 교사의 직급 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6).

※8급상당 △18명→6급상당 7명, 7급상당 11명

라. 상수도사업본부 별정직(공과금요

원) 2명씩 아동상담소 편성권(아동복지지원) 2명으로 상계조정함(표표 3-1, 별표 3-8).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2806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실
2. 식당
3. 수영장 등 체육시설
4. 보육실
5. 상담실
6. 기숙사
7. 도서실
8. 전서실
9. 기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제3조(사업) 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사업: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및 문화·교양 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생활문화교육 및 교양강좌 등에 필요한 과목의 개설·운영

2. 보육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3. 상담사업: 여성의 신앙 또는 가정생활 등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4.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및 이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기숙사·도서실·수영장 등)하고 운영하거나 여유공간을 활용한 무료예식장, 회의장소 등으로의 사용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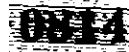
② 제1항제1호의 기술교육·생활문화교육·교양강좌 등에 필요한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은 여성발전센터의 의견 및 이용자들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여성발전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이용정원 등) ①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사업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② 소장은 제5조제1항제1호 중 생활문화교육과목의 신청자가 15인 이하일 경우 이를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자에게 교육사각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사업: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단 1년교육과정은 15세 이상의 여성에 한한다.
2. 보육실: 만 3세 이상의 취약계층 아동
3. 기숙사: 기술교육생 또는 서울특별시 여성상담원외의 직하는 일시보호필요여성 중 소장이 기숙사 이용을 승인한 자. 단 일시보호필요여성의 기숙사 이용조치는 기술교육생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간여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시설 또는 사업에 참가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용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숙사 운영) ①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건강진단서(보건소장 발행)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영수증 등재하고 기숙사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이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숙사이용권을 이용신청자특별권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 1. 기술교육생 : 1년
- 2. 기타 : 7일

④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숙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센터 이용제외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기숙사 이용을 포기한 자로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질병 등의 원인으로 타 이용자와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⑤ 기타 기숙사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소장이 이용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실 운영) ① 보육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실의 운영기간은 기술교육기간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운영시간의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기술교육생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육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 주식 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신청) ①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육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주민등록등본과 소장이 정하는 전보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양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교양강좌의 강의를 시작되기 전까지 강의실명 출석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우대) 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특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및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외) 소장은 여성발전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제외조치를 할 수 있다.

-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 2. 수강중 또는 직할중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 3. 소장의 승인 없이 기숙사에 탁안을 등속시킨 자



- 4. 시설 내역서 접수 또는 소장을 피우지
나 도무렵의물 한 자
 - 5.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을 기
만하여 손해를 입힌 자
 - 6.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 7. 기타 소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장
이 정하는 이용규칙을 위반한 자
- 제11조(물품관리 등지) 여성발전센터의 의
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을 시설 내로 가져오지 아니한다.
- 1. 개인소유의 현금
 - 2. 인화물품
 - 3. 폭발물
 - 4. 기타 소장이 이용규칙으로 관입을 금
지한 물품
- 제12조(시설내역) ① 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을 대외발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별8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
성 제출하고 소장의 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제1항의
의하의 취득한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평가) ① 소장은 여성발전센터
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
하여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의장은 당해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여성복지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로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의장은 매 분기별로 여성발전센터이용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
회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발
전방향 등에 대하여 의장이 제출하는 안

건을 심의한다.

이 소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여성발전
센터 운영에 지극히 유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록 반드시한 의원을 포함
여간 복수의 경우 안을 수 이상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
급 상충하여 참석할 수 없거나 상당 등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 1. (시정일) 이 규칙은 공포후 발효된 기한
한다.
- 2. (다른 규정의 명칭) 서울특별시립근로주
공시설실업근로여성복지부 준 제2조 제6항,
제3조, 제4조 제2항 및 제3호, 제5조 제5항
내지 제9항, 별표 1, 별표 2,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8호서식은 각각 이를 삭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숙사 이용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학 령:

주 소:

연 락 처:

위 본인은 ○○여성발전센터 기숙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시설 및 구조의 무단변경·손상 및 멸실행위를 하지 아니함.
2. 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함.
3. 도박 등 일체의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함.
4. 기타 소장이 정하는 이용규칙 및 지시명령을 성실히 이행함.
5. 고의 또는 과실로 귀 여성발전센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보상하겠음.

19 97 년 2 월 28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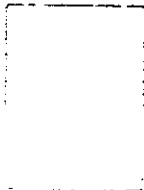
(별지 제3호 서식)

(앞 면)

No. _____

기 숙 사 이 용 증

_____호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기자는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기숙사 이용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소장 ☉

(뒷 면)

월 일							
검 인							
월 일							
검 인							
월 일							
검 인							

제 2029 호

시

부

1997. 2. 28

<별지 제4호 서식>

사 진	기숙사 이용자카드					
	주소일자		년	월	일	
	주소일자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령	
주 소						
가족관계	부양가족수		결혼여부	기혼, 미혼, 이혼, 사별, 기타		
자격연혁			취미, 특기			
전속직상황	자취, 전세, 월세, 하숙, 기타					
재산현황	부 동 산		동 산	기 타		
합우 자립계획						

70-21

<별지 제6호 서식>

보육인지

		계	계 장	소 장
19 년 월 일 요일				
1. 출석상황				
강 원	원 원	결 석	조 비	출 석
2. 교육계획				
3. 교육내용				
4.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수 강 원 서		
성 명			
주 소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APT(연립, 빌라) 동 호	사 진 (3 × 4)	
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학 력	결혼여부(미혼, 기혼)		전 화 번 호
신청과목	과 반		
<p>본인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제 ○기 기술교육 수강을 희망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p> <p>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소장 귀하</p>			
번호	질 수 증		
과 명	과 오전, 오후, 야간반		
성 명	주민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199</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소장</p>			



<별지 제8호 서식>

서울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시설

가. 시설명 :

나. 규모 :

다. 부속시설 :

2. 사용목적 :

3. 사용기간 :

위와 같이 사용코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시설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단체) 주소 :

신청인(단체)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소장 귀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1. 제정 이유

요양·복지증진 및 근로개발을 위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가 공포·시행(96. 9. 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여성의 복지증진 및 근로개발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에 교육·상담·수련·강습·보육·취업·상담·기술·보육·직업·상담·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취학전 아동의 보육사업, 여성의 신장 또는 가정문제 등에 관한 상담사업 및 여유공간을 활용한 시설내외 사업 등으로 함(제3조).

다.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정원은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 시설의 승인을 받아 여성발전센터 소장이 정함(제4조).

라. 교육사업이 참가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으로 하고, 보육실의 경우는 만 3세 이상의 취학전 아동으로 하며, 기숙사는 기술교육생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의 자격을 정함(제5조).

마. 기숙사와 보육실의 이용신청 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6조 내지 제7조).

바. 기술교육·생활문화교육 및 교양강

좌를 수강하려는 자의 수강 신청 절차를 정함(제8조).

사. 생활문화대상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및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는 여성발전센터를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우대의 규정을 정함(제9조).

아. 허가없이 건물·기물 등을 훼손하거나 소장의 명령을 불응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 여성발전센터 이용자가 시설내외에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정함(제11조).

차.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내외 사용허가신청 절차를 정함(제12조).

카.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 및 활용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 직속하에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3조).

타. 규칙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조례시행규칙 중 관련조항을 삭제함(부칙).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조 순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807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① 조래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미술관운영자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제1항에 의한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① 조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조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자가 관람료를 결정할 때에는 관람료라고 결정내역을 사용일 20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관람료가 미술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장은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조(관람권의 집인) ① 조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소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권집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장의 집인을 받아야 한다.

동제1항에 의하여 집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 조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실 사용시간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신청) ① 조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소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실 대관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대관허가가 대관허가후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실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허가 심사) 조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실 대관허가여부 결정은 다시 미술관운영자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관의 취소 등으로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미술관운영자등위원회의 심의를 경할 수 있다.

제8조(냉·난방시설 사용료 징수기간) ① 미술관의 냉·난방시설 사용료 징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냉방시설: 6월 15일~9월 15일
- 2. 난방시설: 11월 15일~4월 15일

대관자는 제1항 각호의 기간에 전시실을 대관하는 경우 조래 제16조 규정에 의한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제1항의 기간 이외에 대관자가 냉·난방시설의 가동을 요청하는 경우 소장은 냉·난방 시설의 가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는 조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서울특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 2.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제10조(소장자로 대어신청 등) ① 조래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장자로 대어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자로 대어(열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장자료인수증을 대여받는 기관(부서)의 책임자 명의로 소장에게 제출하고 자료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소장자료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장자료 대여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소장자료의 대여(열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운영장이 된다.

제12조(주요사업별 자문기구 운영) ① 조례 제32조의 주요 사업이라 함은 미술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기획전시회를 말한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은 단위사업별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단위사업별 전시 추진방향과 초대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단위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단체 (20인 이상)	
의 료	700원	550원	○ 25세 ~ 64세
어 린 이	300원	250원	○ 7세 ~ 12세(초등학교학생 포함)
청소년 및 노인	300원	250원	○ 13세 ~ 24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
노 인	무료	무료	○ 65세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 관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신청 장소 :
- 관 령 기관 :
- 관람권 관 령 검인내역

관람권	구 분	검 인 요 청		비 고
		수 량	금 료	
총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총 대 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관람권서식

8cm

전시명: _____

어 른 용	
관람료: _____	원

주최:

주관:

후원:

199

10:00~17:00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별 취 선)

20cm

전시명: _____

어 른 용	
관람료: _____	원
(문예진흥기금 원 포함)	

199

10:00~17:00

서울특별시립미술관

5cm

[초대권은 관람료관련 문구 삭제]

* 규격은 위와 같이 하며, 도안 및 기재내용은 발매자가 달리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사식)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단 체 의 소재지 (주소)			연락처	자 격 근무처	
전시회명칭					
대 관 기 관	199 ~ 199 (총 일간)	각종반입및설치기간 전 시 기 간 각종반출기간			
대 관 장 소 및 면 적					
사 용 시 간 연 장	일 각	199	사용시간	: ~ : (시간 연장)	
연 장 사 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준례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실 사용시간 연장희가를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사업소장 귀하

99-31
99-30

(별지 제4호 서식)

전시실대관허가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단 체 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자 세 근무처
간 사 회 명 칭		
전 사 디 스크		
대 관 기 관	199 ~ 199 (총 일간)	작 품 반 입 및 설 치 기 간 전 시 기 간 작 품 반 출 기 간
출 품 작 가 및 전 시 작 품	부 문	
대 관 장 소 및 면 적		
관 램 요 금	무 료	
	유 료	대인 천, 소인 천, 단체 천
비 고	첨부: 전시 계획서 및 단체소개자료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13조의 동 조제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주소: _____
성명: _____ (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규하

(별지 제7호 서식)

소장자료인수증

작가명	명 제	소장자료 관리번호	부 문	제작연도	규 격	비 고

대여
기간

199 년 월 일부터 199 년 월 일까지

대
여
조
건

1. 대여기간중(운송시간 포함) 위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함.
- 2.
- 3.

서울특별시미술관운영조례 제2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0조와 상기 대여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위 소장자료를 인수합니다.

1997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성명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소장자료 대여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장 자 료	작가명	명 세	관리번호	부 문	제작연도	규 격	비 고
대 소 기 간	당 초	199	부 터	199	까지		
	연 종	199	부 터	199	까지		
대 의 기 간 인 양 사 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 제24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 소
장자료의 대여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서울특별시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귀하

(재정이슈 및 주요골자)

1. 재정이슈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가 폐지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장이 임기유관일을 정할 경우의
는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휴관일 16일 선까지

시보에 공고토록 함(제2조).

나.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료의 금액을
정하고, 대관자가 관람료를 결정한
때에는 관람료 결정내역을 사용일
20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토록 하
고, 이때 관람료가 미술관의 설립목
적에 비치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
되는 경우 소장은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개	인	(20인 이상)	
역	관	700원	550원	○ 25세 ~ 64세	
역	관	300원	250원	○ 7세 ~ 12세(초등학교 학생 포함)	
합	산 및 군인	300원	250원	○ 13세 ~ 24세 및 하사 이하의 군인	
노	인	무 료	무 료	○ 65세 이상	

다. 전시실의 대관허가여부결정에 있
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되, 대관의 취소 등으로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는 미
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전시실 대관시 냉·난방시설 사용
료 결수기간을 정하고 대관료의 감
면범위를 정함(제8조 및 제9조).

마. 소장자로부터에 관한 필요한 서식
을 정하고,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함(제10조).

바. 주요 전시사업별 자문기구는 단위
사업별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여 전시사업의 추진방향과 초대
작가 선정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위원의 임기는 단위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됨을 규정함(제12조).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7-67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
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혼잡통행료 수입금 전액을 공영버스 운
영, 시대버스의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
업, 시대버스 서비스 개선 및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여, 혼잡통행료 수입금의 사용용
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

하는 점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기존 교통관리계획과 교통방송운영계획 외역 별도의 혼잡통행료 관리계획을 실시함.

나. 혼잡통행료관리계획의 책임은 혼잡통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중앙버스 운영, 시내버스의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투자 및 혼잡통행료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으로 함.

다. 혼잡통행료관리계획의 책임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내버스의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통관리계획의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73-6154~5, FAX: 774-6763,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100-714)

가. 최고사화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관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의견

다.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7-47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92호(92. 3. 26)

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허가된 면적 유수처 북계주한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변경 인가하였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계획과(777-915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 장

가.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0-1(92. 4. 8) 중랑구 면목동 168-2로 주소변경 (주) 남륙상사 대표이사 윤봉중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대우 대표이사 강병호
사업기간	92. 4~94. 3	92. 4~98. 4. 30

나. 기타 사업대상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토지명세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권리인의 주소·성명은 변동사항 없음.

공 고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5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 1. 상호: (주)정강칼앤선
- 2. 대표자: 권경순
- 3. 소재지: 서울 송파구 잠전동 33

다. 신고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31호	(주)정강칼앤선	권 경 순	전화번호: 420-8695-0	전화번호: 421-8717-8

- 4. 변경일자: 97. 2
- 5. 변경사유: 전화번호 변경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6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 판매

- 1. 상호: (주)해든엔터프라이즈
- 2. 대표자: 신건순
- 3.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7

다. 신고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19호	(주)해든엔터 프라이즈	신 건 순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 동 837-7 이사: 정태남, 정태경	소재지: 서울 강남구 선사 동 576-10 이사: 김관태, 황희선

- 4. 변경일자: 97. 2
- 5. 변경사유: 소재지 이전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7호

다단계판매업자폐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주)김정문알로에
- 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40
- 3. 대표자: 김정문
- 4. 폐업일자: 1997년 2월 12일부터
- 5. 폐업사유: 영업부진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48호

1997. 2. 28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서울특별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 (주)용인울중합물산
- 2. 대표자 : 박장래
-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4

가. 신고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 41호	(주) 용인울중합물산	박장래	상호 : (주) 용인울중합물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4	상호 : (주) 용인울중합물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곡동 650-2
			전화번호 : 3461-0438	전화번호 : 554-8801 ~ 3
			후원수당 : 공급가의 35%	후원수당 : 공급가의 25%

- 4. 변경일자 : 97. 2
- 5. 변경사유 : 소재지 이전

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57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 보령 인터내셔널(주)
- 2. 대표자 : 이상일
-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25

4. 변경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제 73호	보령 인터내셔널(주)	이상일	상호 : 보령 인터내셔널(주)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9-25 전화 : 02-565-8011 대표 : 이상일 입원 : 권영수, 양동삼, 이예단	상호 : (주)제이드 마운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6-2 전화 : 02-523-2365 대표 : 손태욱, 황기중 입원 : 박명순, 박돌남

- 5. 변경일자 : 97. 2
- 6. 변경사유 : 사업활성화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58호

드립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청

1. 상호: (주)구스오
2. 대표자: 박정환
3.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11

가. 변경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제116호	(주)구스오	박정환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1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3-3

4. 변경일자: 1997. 2

5. 변경사유: 사업확장

업자의 등·사상 변경신고를 마치고
등고합니다.

1997. 2. 28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61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사항변경

방문판매등약관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

1. 상호: (주)올 라이프 클럽
2. 대표자: 김종한
3.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94

4. 변경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제18호	(주)올 라이프 클럽	김종한	상호: (주)올 라이프클럽	상호: (주)엔 에스엔 사업본부

5. 변경일자: 97. 2

6. 변경사유: 사업확장

서울특별시청
가. 사업명: 석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

나.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2 일대

다. 사업시행자: (주)대우 대표이사 이일
재

라. 시설개요

(1)건축물-지상 1층, 지하 4층(연면적
37,270.4㎡)

○ 주차시설: 주차석 898대, 주차관
제장비, 감시장비 등

○ 부대시설: 관리실, 화장실, 근린생
활시설 등

●서울특별시공고제 1997-65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12호(92. 1. 18)
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시행 허가된 의
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완료되었
기에 도시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주차
계획과(777-9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997. 2. 28

구 분	면 적(m ²)	주 차 대 수	비 고
지상 1층	387.46	-	관리실, 휴게실
지하 1층	10,725.25	30대	주차장, 근린생활, 운동시설
지하 2층	10,931.76	376대	주차장
지하 3층	10,931.76	372대	주차장
지하 4층	4,234.17	120대	주차장
계	37,270.40	898대	

(2) 기타시설 : 지상 조정시설, 산책로, 조형물 등

다. 사업시행기간 : 96. 1. 15 ~ 96. 12. 30

구 고 시

● **용산구고시제 199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1996-56호(96. 12. 11)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

- 합니다.
1997. 2. 28
봉 산 구 청 장
1. 사업명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이촌한강민영아파트(주) (주) 건축주택조합(조합장 : 이석장) 코오롱건설(주)
 3. 사업주체 소재지 : 용산구 이촌동 301-107
 4. 사업시행 의지 : 용산구 이촌동 301-55 외 15필지

구 분	A 단 지	B 단 지	비 고
4. 사업부지면적	25,532.40m ²	2,243.00m ²	
5. 도로부지	647.17m	3.78m	
6. 대지면적	24,885.23m ²	2,239.22m ²	
7.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2층 9동 787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0층 1동 47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8. 총건축면적	111,756.416m ²	5,890.955m ²	

9. 시행기간 : 1996. 12. ~ 1999. 12. 30
10. 의제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각호에 관한 사항
용산6가 69-11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지 저층부분) 제지
11.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주택과에 보관)

● **동대문구고시제 1997-1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동대문구 제기동 892-56 지상의 반전아파트(건축주택조합 대표 이훈규) 외 119명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주택개발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97. 2. 28

동대문구청장

10조목 의한 건설선지령의 공포

가. 사업명: 민원, 배관공사업, 부영건설
사업계획승인

나. 사업주체

1. 성명: 한권아파트재건축주주주조합 대
표 이봉근 외 119명

2.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
-66

다. 사업 시행 개요

1.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
-66

2.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3. 대지면적: 8,363.60㎡

4. 건축면적: 36,107.76㎡

5. 건축선적: 1,696.40㎡

6. 건폐율: 19.88%

7. 용적율: 322.47%

8. 사업규모: 지하 3층, 지상 23~25층
아파트 3개동 261세대 및 부대부속
시설

가. 사업시행기간: 1997. 2~1999. 10

나.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 또는 공리 사
항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다. 사업시행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아리랑길 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7~109-32	폭(B)=25~30m 연장(L)=360m	

다.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인
가일로부터 97. 12. 31일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성북구고시제1997-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 1. 7)로 도시계획
확시령(도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08
호(71. 6. 3)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23호(95. 12. 1)로 도시계획
확시(도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
구고시 제1995-104호(96. 1. 4)로 지적승
인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제100-22
호(95. 4. 14)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
시계획가된 "아리랑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
8)와 관설관리과(920-3400-3)제 비록하
고 토착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합니다.

1997. 2. 28

성북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별첨 목록 조서

사업명 : 아리랑길 확장공사

소재지 지번	당초인가사항				별첨인가사항			
	물건의 종류	수용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자	물건의 종류	수용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자
정릉동 111-42, 44, 109-7	건물지하	297	구자원·안영애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단벌리 90 (근저당권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5-3 (주)우리자동판매)		지하 1층	207.73	구자원·안영애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단벌리 90 (근저당권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5-3 (주)우리자동판매)	
	건물 1층	194	"		지하 2층	324.66	"	
	건물 2층	218	"		건물 1층	231.72	"	
	건물 3층	218	"		건물 2층	257.14	"	
	건물 4층	218	"		건물 3층	257.14	"	
	건물 5층	218	"		건물 4층	257.14	"	
	건물 6층	218	"		건물 5층	257.14	"	
	건물 7층	218	"		건물 6층	257.14	"	
	난간	1식	"		건물 7층	231.14	"	
	수목	11주	"		난간	1식	"	
	담장	1식	"		수목	11주	"	
	속외주차장	1식	"		담장	1식	"	
					속외주차장	1식	"	

●도봉구고시재 1997-6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재1996-49호(96. 9. 11)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25조(실시계획의 인

가)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 고 같은 법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건설관리과와 토목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28

도봉구청장

가. 사업개요

순	사업 목적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	도	지정결정고시	변경 고시
1	도봉동 39-1번지(변경없음) 2~41구간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도봉동 관산아파트-도로 -관산역간 도로개설공사	E=6m	L=160m	제95-38호	제95-38호 (변경없음) (95. 9. 11)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장(변경없음)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
음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
적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3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바.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 도봉구청 전
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
(901-5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지 조 석(변경분)

사업명 : 도봉동 한신아파트~도봉삼역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번	지부	지적면적 (㎡)	권입면적 (㎡)	소유자		소재지번	지부	지적면적 (㎡)	권입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봉동 40-13	철	234	234	철도청 중구 봉래동2가 122						변경 없음	
2	40-15	권	320	320	박봉규 강북구 우이동 181-7						변경 없음	
3	40-18	철	67	67	철도청 중구 봉래동2가 122						변경 없음	
4	37-14	구	7	7	도봉구						변경 없음	
5	37-15	구	11	11	도봉구						변경 없음	
6	41-3	권	22	22	박봉규 강북구 우이동 181-7						변경 없음	
7	42-4	답	13	13	김원수 도봉동 349						변경 없음	
8	43-3	잡	198	198	도봉동 지역주택조합 도봉동 613-37		43-3	잡	198	198	도봉동 지역주택조합 도봉동 613-37 민원기 도봉동 579-7 양성철 강남구 삼성동 21-25 김상석 상봉 246-2 서용순 광학동 661-21	
9	44-14	권	7	7	김명수 성북구 길음동 496-8 홍상학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구 문정동 150 제 밀리(A) 225-102) (이진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2 농작(A) 다-810)		44-14	권	7	7	김명수 성북구 길음동 496-8 홍상학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구 문정동 150 제 밀리(A) 225-102) (이진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2 농작(A) 다-810)	

70-45

Y

HT

연번	연 계 권				별 강 부					
	소 개 지 번	지 목	지 적 (㎡)	연립면적 (㎡)	소 개 지 번	지 목	지 적 (㎡)	연립면적 (㎡)		
9	도봉동 44-14	전	7	7	(최윤정 송파구 신천동 20-2 진주(가) 10-402) (조정화 은평구 녹번동 29-106 102호) (유정옥 종로구 통상동 2-6)	도봉동 44-14	전	7	7	(최윤정 송파구 신천동 20-2 진주(가) 10-402) (조정화 은평구 녹번동 29-106 102호) (유정옥 종로구 통상동 2-6) (유태명 성북구 안암동 153) (성학세무서장 성북구 삼선3가 3-2)
10	44-13	전	46	46	김경근 도봉동 340 김진성 도봉동 211					일 용
11	44-15	전	89	89	김병수 성북구 김충동 496-8 홍삼학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구 문정동 150 배림리(가) 225-102) (이진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학(가) 다-810) (최윤정 송파구 신천동 20-2 진주(가) 10-402) (조정화 은평구 녹번동 29-106 102호) (유정옥 종로구 통상동 2-6)	44-14	전	89	89	김병수 성북구 김충동 496-8 홍삼학 방학동 681-24 (마광영 송파구 문정동 150 배림리(가) 225-102) (이진기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공학(가) 다-810) (최윤정 송파구 신천동 20-2 진주(가) 10-402) (조정화 은평구 녹번동 29-106 102호) (유정옥 종로구 통상동 2-6) (유태명 성북구 안암동 153) (성학세무서장 성북구 삼선3가 3-2)

70-47

연번	번 경 전					번 경 후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재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도봉구 44-17	도	45	45	도봉구						없	용
13	44-16	철	180	180	철도청 중구 봉대동2가 122						없	용
14	44-18	철	9	9	철도청 중구 봉대동2가 122						없	용
15	42-1	담	1	1	김윤수 도봉동 349						없	용

물 권 조 서(별경분)

사업명 : 도봉동 한신아파트~도봉산역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번 경 전					번 경 후						
	소재 지번	물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소재 지번	물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도봉동 44-16	수목		1식	박봉규 강북구 우이 동 181-7						없	용
2	44-13	수목		1식	철도청 중구 봉대동 2가 122						없	용
3	44-14	수목		1식	김병수 성북구 진흥 동 496-8 홍삼학 밭학동 681- 24						없	용
4	43-3	수목		1식	도봉동 지역주택조합 도봉동 613-37						없	용
5	42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1동	박중수 도봉동 42						없	용

70-48

●은평구고시제1997-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시고시 제3호(92. 1. 25)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원 불상동
 357-14~365-4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
 하여 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으로 도시계
 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한의령규칙 제2657호에 의거 도
 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7. 2. 28

은평구청장

1. 사업소재지: 은평구 불상동 357-14~
365-4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불상동 357-14~365-4간 도로
개설공사
3. 사업 규모
 - B=6m, L=35m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은평구 녹번동 84
 - 성명: 은평구청장
5.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9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
세: 수용할 토지 지번 변경(발청)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발청
8. 기타: 관계도서는 은평구 건설국 토목과
(350-1405)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 2029 호

4

10

1997. 2. 28

묘지 및 건물(지장물) 조사

(묘 지)

연번	지 번	지목	묘지(m)		소 유 자		지 번	지목	묘지(m)		소 유 자		비 고
			총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총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불광동 365-2	대	202	23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불광동 365-7	대	23	23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면면적	
2	265-3	대	202	74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365-8	대	74	74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지면면적	
3	265-4	대	175	18	고형하 은평구 불광동 372-1	365-6	대	18	18	고형하 은평구 불광동 372-1		지면면적	

(건 물)

연번	지 번	건 물(지장물)				지 번	건 물(지장물)				소 유 자		비 고
		종 류	구조	총 면적	면적 (㎡)		종 류	구조	총 면적	면적 (㎡)	성 명	주 소	
1	불광동 365-2	철대문 서피 상고 담장 속백나무 향나무 추목나무 구기자나무			1식 1식 2.2 10.4×2.2 1주 1주 1주 1주	불광동 365-7	철대문 서피 상고 담장 속백나무 향나무 추목나무 구기자나무			1식 1식 2.2 10.4×2.2 1주 1주 1주 1주	이정옥·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국민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면 면적

70-56

연번	지번	당 초				지번	면 집				소유자	비고	
		건물(지상물)					건물(지상물)						
		종류	구조	층면적	면적(m ²)		종류	구조	층면적	면적(m ²)			성명
2	불광동 365-3	석유보일러 (17,000Kcal)			1식	불광동 365-8	석유보일러 (17,000Kcal)			1식	이정복·배명수	은평구 불광동 365-2	지번 변경
		보일러실			1식		보일러실			1식			
		창고			6.8		창고			6.6			
		철폐물			1식		철폐물			1식			
		담장			22.4×0.5		담장			22.4×0.5			
		수도			1식		수도			1식			
		서버			2식		서버			2식			
		비가리개			1식		비가리개			1식			
		포도나무			1주		포도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대추나무			1주			
		송악나무			1주		송악나무			1주			

●양천구고시제1997-6호

도시계획사업(학교·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81. 6. 27)에 의해 시행허가되고 양천구고시 제1996-1호(96. 1. 25)에 의해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규칙 제3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함이다.

2.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장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다.

1997. 2. 28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양천구 선정동 산 109-1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도로)양천고등학교(변경없음)

다. 규모

○ 대지: 12,663m

○ 건물연면적: 7,915.97m

○ 도로: B=6m L=81.5m

라. 사업시행자: 양천구 선정동 산 109-1 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 정금순(변경없음)

마. 사업기간

당초: 81. 6. 27~96. 12. 31

변경: 81. 6. 27~97. 12. 31

바. 설계도서: 생략

●구로구고시제1997-1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 10. 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구로

구고시 제1992-27호(92. 10. 30)로 지정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원회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다.

1997. 2. 28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구로구 개봉1동 73-47~73-4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개봉1동 73-2~70-2간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B=6m, L=2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주소: 구로구 구로동 435

○ 명칭: 구로구청장

마. 사업기간: 인가고시일로부터 730일

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물건조서

토 건 조 서

사업시행자명 : 구로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5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개봉1동 73-23~70-2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개봉1동 73-47	대지	77	77		이원희	구로구 개봉동 73-23(T: 032-344-3690)
							(근저당권, 지상권 구로구 개봉동 731-28 개봉1동 덕마온고)
2	71-7	대지	14	14		이원희	구로구 개봉동 73-23
3	71-11	대지	62	62		이원희	구로구 개봉동 73-23
							(근저당권 인천 남구 주안동 9-29 우진빌라 가-202 반인숙 571223-2155421)
4	71-9	대지	23	23		유순자	구로구 개봉동 73-2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개봉1동 73-23	주 벽	시멘기와/블록	42㎡		이원희	구로구 개봉동 73-23
		화장실	슬레이트/블록	5㎡			
		가전물	슬레이트/블록	9㎡			
		대 문	철재	2식			
		담 강	시멘블록	L=3.8m			
2	71-6	주 벽	시멘기와/콘크리트	60㎡		이원희	구로구 개봉동 73-23
		대 문	목재	1식			
		화장실	슬레이트/블록	5㎡			
		대 문	철재	1식			
		담 강	시멘블록	L=1m			
							(근저당권 인천 남구 주안 동 9-29 우진빌라 가-202 반인숙 571223-2155421)

영 업 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개봉1동 71-6	영업권	화니수리	1식		김정희	구로구 개봉동 71-6



● 구로구 고시제 1997-19호

1997. 2. 28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구로구청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41호(78. 7. 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410호(78. 8. 14)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1995-67호(95. 10. 16)로 정정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27조, 서울특별시 행정관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다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할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 고척1동 98-148 ~ 98-158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고척1동 고척초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B=8m, L=15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 주소: 구로구 구로동 435
 - 명칭: 구로구청장
- 마. 사업기간: 인가고시일로부터 730일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 공사명: 고척1동 고척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번	지 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1	고척동 98-143	대 지	62	62	정호영	구로구 고척동 98-64
2	98-152	대 지	15	15	최서남	구로구 고척동 98-94
3	98-153	도 로	1	1	황치섭	구로구 고척동 98-96

물 건 조 서

번호	소재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1	고척동 98-63 98-64 (양지상)	담장	서멘벽돌	14㎡		정호영	구로구 고척동 98-64
		계단	콘크리트	1식			
2	98-94	담장	서멘벽돌	2㎡		최서남	구로구 고척동 98-94
3	98-96	주벽	슬래브적벽돌	1		황치섭	구로구 고척동 98-96
		계단	콘크리트	1식			
		담장	적벽돌	5㎡			
		대문	철제	2식			

● 동작구고시제 1997-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97. 2. 28

동작구청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주체
 - 가. 성명: 기흥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장 안길진
 - 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52-15
3. 사업위치·면적 및 규모
 - 가. 사업위치: 동작구 사당동 210 외 3필지

1. 사업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면적(㎡)	면적(㎡)	사업비(천원)	동수	층수	세대수
공동주택(아파트)	3,464.0	806.11	15,956.83	15,764,125	1	10~19	120
(대지면적)	3,357.0	927.745	16,018.96				
+ 도로: 107							

1. 사업시행기간: 1995. 12 ~ 1998. 5
2. 간접비용의 과다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의 의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액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 라.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마.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허가
3. 사업승인도면: 별첨과 같음.

● 동작구고시제 1997-14호

주택재개발본동제3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533호(92. 6. 27)로 구역지

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27호(93. 10. 20) 및 같은 고시 제230호(94. 7. 6)로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9호(95. 7. 1) 같은 고시 제52호(97. 1. 3), 같은 고시 제8호(97. 2. 12)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주택재개발본동제3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4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7. 2. 28

동작구청장

1. 재개발사업의 명칭: 주택재개발 본동제3구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49-23 동 83필지(6,862㎡)
3. 관리처분계획인가연월일: 1997년 2월 19일

4. 시행자의 주소 및 설명: 서울특별시 동 (등급)
작구 본동 357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본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박 가. 분양대지 및 건축시설 내역

1) 토지

구 분	계	대 지	토 로	일 야	수 도 용 지	장 종 지
시행전	6,862㎡	6,294㎡	132㎡	159㎡	277㎡	-
시행후	6,862㎡	6,155㎡	7㎡	-	174㎡	526㎡

2) 건축시설

구 분	계	조감권분양	계획시설	보류시설	비 고
대 지	161	51	109	1	
25.79평형	81	4	77	-	
33.20평형	30	18	11	1	
32.20평형	18	-	18	-	
43.09평형	32	29	3	-	
상 가	1,276.28		1,276.28		

나. 신설 또는 제거하는 공공시설의 명목 : 기계생략

주변재개발 본동 제3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동작구별 주택과(820-1381)와 조합사무실(824-5874)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고시제1997-4호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34호(68. 1. 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5호(96. 11. 8)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54호(96. 11. 16)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권 도시계획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낙성대지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시는 관악구청 사회진흥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7. 2. 26

관 악 구 청 장

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23-9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 "낙성대지구")

다. 면적 또는 규모						
사 업 명				면 적 또는 규 모		비 고
도시계획사업(스포츠센터, 도로)				스포츠센터		○ 부지면적 10,357㎡ -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도로		○ 부지면적 469㎡
<p>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p> <p>다. 사업시행기간: 사업인가일로부터 2000년 12월</p> <p>바. 사업장 토지 및 물건조사: 필경사</p> <p>사. 관공도서: 관악구청 사물등록부의 외</p>				<p>처</p> <p>※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사회전홍과(02-880-3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토지 및 지상물조사						
스포츠센터						
토지조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소 유 자 주 소
		공부상	현 황	공부상	권 립	
1	223-9	전	전	2,603	2,603	양태성 봉천동 215-6
2	223-2	잡	잡	99	99	김정자 동작구 노량진동 126-15
3	223-3	전	전	99	99	양태성 봉천동 215-6
4	224-1	하천	전	357	357	이기연 외 5인 안양시 동작구 관양동 1493-10
5	224-3	전	전	1,333	1,333	전주이씨덕양군파청계리장계령계문중 경기도 의정부시 성계동 336
6	225	잡	잡	2,350	2,350	김일두 봉천동 1601-2
7	226-2	달	달	242	242	김일두 봉천동 1601-2
8	738-340	하천	전	2,473	2,473	국(건설교통부)
9	738-342	하천	하천	214	214	서울특별시
10	225-1	전	전	397	397	서울특별시
11	225-2	잡	잡	175	175	서울특별시

· 지장물조서

연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일책이용 현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봉천동 738-340	건물 락장	시멘조 블록 대문	84.6m 21.7m 1조	주거	김덕기	봉천동 370-1	
2	738-340	건물 대문	시멘조 철재	16m 1조	주거	이상호	봉천동 738	
3	738-340	건물	시멘조 담장 대문	14.6m 5m 1조	주거	하달선	봉천동 738-23	
4	738-340	비닐하우스 (수목)		1식		최순덕	대방동 10-4	한일농원
5	738-340	정화수시냇		1식		양태성	봉천동 218-6	
6	223-9	수목		1식		양태성	봉천동 218-6	
7	224-1 224-3 225	비닐하우스 (수목)		1식		이완준	봉천동 738-19	관악농원
8	224-1 224-3	비닐하우스 (수목)		1식		손일광	신림동 106-23	인현농원
9	225 226-2	건축과제		1식		김우두	봉천동 28-76	

· 도로조서

· 토지조서

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성명	소유자	
		공부상	현황	공부상	권입		주소	주소
계					469			
1	봉천동 224-2	전	전	82	82	전주이씨익양군과청제리장계령계문중 의향시 청계리 356		경기
2	226	담	담	166	166	김일두	봉천동 1601-2	
3	226-1	전	도로	99	99	최현실	봉천동 218	
4	768	도로	도로	122	122	국(건설부)		

●관악구고시제1997-15호
 도시계획사업(공공의창사)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7-14호(97.

2. 5)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한 관악구 보건소청사 설치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회사(공용의 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총무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제보입니다.

1997. 2. 28
관악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71-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용의 공사)
 나. 사업의 명칭: 관악구 보건소정사 설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721.6㎡, 건축면적 330.66㎡, 연면적 3,056.15㎡
 ○ 층수: 지하 2층, 지상 7층
 ○ 용도: 공공업무시설

라. 사업시행자: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인가일~1998. 2.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칭: 별첨 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소 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면적 (㎡)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봉천동 1571-4	대	721.6	721.6	대 지	조중훈 전남 순천시 인월동 638 (근적당권 - 서울 영등포구 석의도동 20 주식회사 금성사)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봉천동 1571-4	건물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담장 정화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시멘트블록	3,056.15	428.01 기계실/주차장 494.16 골프연습장/주차장 330.66 도 소매점/주차장 326.16 음식점 326.16 교회 및 사무실 326.16 사무실 326.16 사무실 326.16 학원 및 주택, 사무실 172.52 사무실 1식 1식	조중훈 전남 순천시 인월동 638	

연번	소재지	문건의 종류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1	봉천동 1571-4	관악골프클럽	1식	골프연습장	이화성 동작구 노량진동 122-24
2	-	금융산업(주)	-	전자복합대리점 및 사무실	금융산업(주) 관악구 봉천동 1571-4
3	-	생관국산	-	일반음식점	황미숙 관악구 봉천동 877-35 일출삼아트빌라 303
4	-	서울교회	-	교회	이형호 관악구 봉천동 1571-4
5	-	우주전자크라이그	-	사무실	이건주 서대문구 창천동 208
6	-	강성자동차산업(주)	-	사무실	김태명·최병주 관악구 봉천동 1571-4
7	-	강남보습학원	-	사무실	김충식 동작구 상도동 79-26
8	-	LG전자 노량진 고주형압달 사무소	-	사무실	LG전자(주) 중구 남대문로5가 537

●강동구고시제1997-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민
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의 의지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1997. 2. 28

강 동 구 청 장

1. 사업명: 무궁화연립제건축주택조합
2. 사업주체: 무궁화연립제건축주택조합 조
합장 오금평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4-5
나. 대지면적: 2,882.00㎡
다. 건축면적: 9,680.15㎡
라. 규모: 지하 1층, 지상 16층 아파트 1
동 80세대 및 부대시설.
4. 변경내용
 - 기초공사등법변경(메트에서 파일)
 - 승용승강기 17인승 운구용으로 규모
조정

○ 각 세대 보일러실 연도설치 및 방문설
치

○ 정화조 형태변경 등

첨부: 설계도서(생략)



●마포구공고제1997-53호

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건설업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공고합니다.

1997. 2. 28

마 포 구 청 장

상 도	양도업종 및 인가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면적 번호	상 호 소 매 지	상 호 소 매 지
97. 2. 20	석공 92 석물 04-31	대 호 산 업 마포구 성산동 개발주식 242-19 회사	장석주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중 성화전업구 성화동 25- 5

●마포구공고제1997-58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실시계획공람

1. 마포구 성산동 533-1 외 4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6조의4항 제10호를 의하고 서울특별시행정전담위원회의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발용지일 것이나, 특수지역 및 하천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공도하는 마포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의 의견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2. 28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사업명: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 사업시행지: 마포구 성산동 533-1 외 41필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종류: 시장

- 규모

- 부지면적: 63,716㎡(10,200평)

- 건물용 면적: 14,968㎡(4,527평)

- 도시계획사관: 서울특별시도시계획 1996-226호(96. 8. 8.)로 도시계획청정 및 변경청정고시

-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1997. 12. 31

- 나. 사업지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라.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산업과(330-2305~7)

-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계시문은 생략).

- 바. 토지 건물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따로붙임(계시문은 생략).

토 지 조 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	권입면적 (㎡)	실효이용 상 황	소 용 자	
	동	번지					성 명	주 소
1	성산동	392-1	천	94	94	대	서울특별시	
2	성산동	393-1	천	57	57	대	서울특별시	
3	성산동	393-6	천	9	9	대	서울특별시	
4	성산동	407	천	260	260	대	서울특별시	
5	성산동	527-6	천	783	197	대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소 영 지 동	지 번 지	지 목	지 적 (㎡)	현 업 면 적 (㎡)	실 적 이 용 상 황	소 유 주 인
6	성산동	533-1	잡	81,907	12,741	대	서울특별시
7	성산동	534-2	잡	5,015	457	대	서울특별시
8	성산동	531-5	전	2,343	1,084	대	서울특별시
9	성산동	535	잡	1,980	1,675	대	서울특별시
10	성산동	530	잡	1,197	1,197	대	서울특별시
11	성산동	537-1	전	2,241	2,241	대	서울특별시
12	성산동	538	잡	2,491	2,491	대	서울특별시
13	성산동	539	전	2,053	2,053	대	서울특별시
14	성산동	540	잡	340	340	대	서울특별시
15	성산동	541	잡	1,581	1,581	대	서울특별시
16	성산동	543	전	4,800	789	대	서울특별시
17	성산동	544	잡	16,407	3,403	대	서울특별시
18	성산동	551	전	10,702	76	대	서울특별시
19	성산동	500-3	전	1,372	172	대	서울특별시
20	성산동	407-5	전	250	250	대	서울특별시
21	성산동	391-1	전	306	270	대	서울특별시
22	성산동	527-13	전	111	111	대	서울특별시
23	성산동	528-6	도로	28	28	대	서울특별시
24	성산동	535-1	전	425	425	대	국(건설부)
25	성산동	412-7	전	12	12	대	서울특별시
26	성산동	536-1	전	83	83	대	국(건설부)
27	성산동	409-7	전	161	161	대	서울특별시
28	성산동	537-3	전	197	197	대	서울특별시
29	성산동	537-4	전	497	181	대	서울특별시
30	성산동	538-3	전	22	18	대	국(건설부)
31	성산동	408-1	전	40	4	대	국(건설부)
32	성산동	407-15	전	290	132	대	서울특별시
33	성산동	407-16	전	176	167	대	서울특별시
34	성산동	393-4	잡	55	55	대	서울특별시
35	성산동	392-4	잡	51	51	대	서울특별시
36	성산동	542-3	전	82	82	대	서울특별시
37	성산동	542-2	잡	278	58	대	서울특별시
38	성산동	393-5	잡	7,896	167	대	서울특별시
39	성산동	391-4	전	26	2	대	서울특별시
40	성산동	538-1	잡	1	1	대	국(건설부)
41	성산동	538-2	전	21	21	대	서울특별시
42	성산동	391-3	잡	5	5	대	서울특별시
계				146,614	33,718		

물 질 소 시

일련 번호	소재지 동	물건의 종류	구소 및 구로	면 적(㎡)	신청의종 상	소유 권 인
1	성산동 533-1	간편시설	경음트러스조	14,966	14,966	시 상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제 1997-2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신청업종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여
본 구의 전문건설업 양도인가신청서의 무방

사항령 제19조제6항 및 동령 시행규칙 제11
조제3항 규정에 의거한 이통 공고합니다.

1997. 2. 28

양천구청장

가. 양도인가구역

양 도 인 가 일 1997년 2월 19일

인공된 면적번호 조경시설물설치공사(94 서울-19-11)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	---	---	---	---	---	---	---

상	호	신	용	제	유	공	사	신	용	제	유	전	설	(수)
---	---	---	---	---	---	---	---	---	---	---	---	---	---	-----

대	로	자	이	송	로	이	공	호
---	---	---	---	---	---	---	---	---

영	업	소	제	지	양	천	구	신	선	6	동	1002-8	양	천	구	신	선	6	동	1002-8
---	---	---	---	---	---	---	---	---	---	---	---	--------	---	---	---	---	---	---	---	--------

도	금	한	도	액	520,317,000원(96년)	520,317,000원(96년)
---	---	---	---	---	-------------------	-------------------

●구로구공고제 1997-3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5호(81. 12. 22)로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3호
(83. 2. 25)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
시계획법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와 제6조, 서울특별시행정관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
고합니다.

2. 공람대응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단
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권제언예외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승단 불응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구로구청 트럭차

1997. 2. 28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동 392-95~391-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
설공사

다. 사업규모 : B=20m, L=60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
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첨 토지조서

따로붙임 : 토지조서 1부, 위치도 1부

토 지 조 서

○ 공사명 :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번호	소재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1	구로동 390-203	대	5	5	권언석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 106-308
2	390-204	대	36	36	권언석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 106-308
3	391-12	대	99	99	김종면	구로구 개봉동 337-20
4	391-6	철	382	382	국	철도청
5	391-13	답	332	332	김종섭	구로구 구로동 528-3
6	391-15	답	504	504	김종면	구로구 개봉동 337-20
7	392-95	대	113	113	이용배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신시가지 [㉠] 1027-303
8	395-11	철	1,715	1,715	국	철도청
9	397-34	대	11	11	국	철도청

● 구로구공고제 1997-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람

1. 건설부고시 제738호(63. 12.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78호(78. 8. 9)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79호(80. 8. 4)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와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구로구청 토목과

1997. 2. 28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67-21~487-89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경부철도~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B=25m, L=360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마.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및 이해관계인 : 별첨 토지조서
- 따로붙임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	실제이용 현 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1	구로동 467-70	대	10		이영순	구로구 구로동 467-13		467-32
2	467-22	대	100		류도선	구로구 구로동 467-22		
3	467-23	대	9		연갑희	구로구 구로동 467-23		467-4
4	467-21	대	120		배완열	구로구 구로동 467-4		
5	467-69	대	94		김태규	구로구 구로동 467-27		467-27
6	467-68	대	71		김길환	구로구 구로동 467-26		467-26
7	467-56	대	2		윤기명	구로구 구로동 572-33		467-44
8	467-57	답	72		윤기명	구로구 구로동 572-33		467-49
9	467-58	대	15		유승헌	용산구 한강로3가 40(유창돌, 정연 화 동소동번지)		467-50
10	467-51	대	20		한인택	종로구 창신동 595-104		467-20
11	467-20	대	97		한인택	종로구 창신동 595-104		467-4
12	467-48	대	53		김재춘	송파구 가락동 극동A 1-1502		467-41
					김세환	송파구 가락동 극동A 1-1502		
13	467-67	대	36		강인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2 동양나 이론 사택A-22		467-15
14	467-66	대	29		신홍우	구로구 구로동 467-14		467-14
					정종주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85-4 한양 연립 A-201		
15	467-19	대	90		김치호	구로구 구로동 467-19		467-14
16	467-59	대	101		허정숙	구로구 구로동 467-47		467-47
17	467-18	대	2		허정숙	구로구 구로동 467-47		467-4
18	467-65	대	8		김용환	구로구 구로동 467-13		467-13
19	467-16	대	76		강영구	구로구 구로동 739-14		467-4
20	467-46	대	83		박경애	구로구 구로동 766-21		
21	467-17	대	15		강영구	구로구 구로동 739-14		467-4
22	467-1	답	20		윤기명	구로구 구로동 572-33		
23	467-54	도	15		이철현	구로구 구로동 467-8		467-9
24	467-8	대	80		이철현	구로구 구로동 467-8		467-4
25	467-60	대	120		박노철	구로구 구로동 486-69		467-4
26	467-61	대	104		주봉수	구로구 구로동 467-7		467-7
27	469-18	도	75		김용포	구로구 구로동 467-10		469-8
28	469-17	대	19		박문식	관악구 사당동 422-5		469-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	실제이용 현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비고 소재지
29	구로동 469-10	대	30		박남식 영등포구 대림동 739	469-3
30	468-1	대	570		김학일 강서구 화곡동 339-5	468
31	465-6	대	16		심영자 구로구 구로동 465-1	465-1
32	465-7	대	45		김영만 구로구 구로동 465-4	465-4
33	463-76	대	105		박갑영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41 박규신 구로구 구로동 463-41	463-56
34	463-77	대	372		박갑영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41 박규신 구로구 구로동 463-41 김순자 구로구 구로동 479-48 박현동 구로구 구로동 463-32 방달현 영등포구 당산동1가 1-130	
35	463-75	대	35		박갑영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41	463-57
36	463-74	대	115		김승일 구로구 구로동 463-55	463-55
37	463-73	대	42		장경향 구로구 구로동 463-52	463-52
38	463-72	대	81		한동준 구로구 구로동 463-31	463-31
39	463-71	대	5		최병순 구로구 구로동 463-30	463-30
40	463-70	대	33		한홍일 천안구 봉천동 936-2	463-29
41	463-68	대	1		노연심 구로구 구로동 463-25	463-25
42	463-69	대	2		최병순 구로구 구로동 463-30 전의진 구로구 구로동 463-28	463-28
43	481-4	대	324		김순영 구로구 구로동 339-70	481
44	481-13	대	400		정준영 구로구 구로동 339-70 문형수 서초구 서초동 1685 삼동A 13-603	481-2
45	481-12	대	92		박재권 강남구 청담동 134-18 삼익② 2-1105	481-3
46	481-14	대	79		조운구 구로구 구로동 705-17	481-1
47	482-8	대	942		정인병 대원직할시 문창동 3-16	482-5
48	482-11	대	526		김성구 충남 서산군 태안읍 동문리 481	482-1
49	482-5	대	50		정인병 대원직할시 문창동 3-16	
50	482-9	대	26		정인병 대원직할시 문창동 3-16	482-5
51	482-10	대	7		서울통상(주) 중구 명동2가 10	482-4
52	482-12	대	22		김성구 충남 서산군 태안읍 7 동문리 481	482-6
53	487-59	대	83		노경구 경남 창원지 대원동 40-1 새경남③ 1-203 한승선 서초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① 212-1102	487-51



상권 번호	소재지 지 역	지 목	현면적 (m)	신축이종 현 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모 지 번
					성 명	주 소	
54	구로동 487-58	대	66		노경구 경남 창원시 대원동 40-1 새경남사 1-203 한승선 서초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 212-1102	487-51	
55	487-57	대	40		최정모 서대문구 창천동 357-35	487-51	
56	487-51	대	36		차명수 구로구 구로동 487-51		
57	487-50	대	109		윤도복 구로구 신도림동 439 조홍원 강서구 등촌동 275 김석영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34	487	
58	487-98	대	2		박인환 구로구 구로동 487-48	487-18	
59	487-112	대	32		박재철 구로구 구로동 425-50	487-66	
60	487-88	대	106		김상순 종로구 관철동 263 양완전 성동구 신당동 52-286	산 76-4	
61	487-89	대	279		김상순 종로구 관철동 263 양완전 성동구 신당동 52-286	산 76-4	
62	487-90	대	174		진병호 금천구 독산동 956-2 라-104	산 76-4	
63	487-113	대	49		진병호 금천구 독산동 956-2 라-104	487-91	
64	487-96	대	41		채수중 관악구 신림동 475-84	487-76	
65	487-102	대	48		양상수 여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플러몬시 델셀플레이크스 1300	487-24	
65	487-3	전	75		김상순 종로구 관철동 263 이예영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동 22-1107 양명배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 512-501 양 흥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9-508 양천기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동 22-1107		
67	487-83	전	1		김상순 종로구 관철동 263 양완전 성동구 신당동 52-286	487-24	
66	487-82	전	179		김상순 종로구 관철동 14-2 이예영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동 22-1107 양명배 양천구 목동 912 목동신시가지 512-501 양 흥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 9-508 양천기 서초구 서초동 1332-1 우성동 22-1107		

일련 번호	소재지 시 번	지 종	의입면적 (㎡)	실제이용 현 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모 적 면
					성 명	주 소	소 유 비 율	
69	구로동 454-82	대	160		이국성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10	454.50	
					천석우	구로구 구로동 487-42		
					김낙근	구로구 구로동 487		
					이원성	구로구 구로동 487		
					김애자	구로구 구로동 487		
					이성희	구로구 구로동 487		
					이성숙	구로구 구로동 487		
					이성애	구로구 구로동 487		
					이성국	구로구 구로동 487		
					이성단	구로구 구로동 487		
민동하	구로구 구로동 487-13							
70	487-105	관	39		김낙근	영등포구 영등포동 223	487-8	
71	487-104	대	10		민동하	구로구 구로동 487-13	487-13	
72	487-106	잡	66		천석우	구로구 구로동 487-42	487-11	
73	487-107	대	11		천석우	구로구 구로동 487-42	487-42	
74	487-108	대	5		천천일	구로구 구로동 487-42	487-43	
75	487-109	대	10		김동근	구로구 구로동 487-44	487-44	
76	487-110	대	10		유영술	영등포구 대림동 512-8	487-45	
77	487-99	대	6		성경열	충남 연기군 서면 외촌리 132	487-46	
78	487-100	대	2		김명수	구로구 구로동 487-47	487-47	
79	487-111	대	28		박계철	구로구 구로동 425-50	487-49	

● 서초구공고제 1997-47호
도시계획결정(변경)을위한공람

1. 우리 구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시를 공람합니다.

2. 본 도시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7. 2. 19 ~ 1997. 3. 5

나. 공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570-6385~7)

1997. 2. 28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계획사실 현황 및 변경결정(안) 조사

구 분	사 설 명	위 지	면 적(㎡)	바 고
결 정	전기공급설비	서초구 서초동 1623-3	1,407.9	교대변전소 건설
가 경	어린이공원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63,250	계부시설 명칭변경(어린이공원)
변 경	근린공원		63,250	(근린공원)
기 경	녹지	서초구 양재동 288 일대	196,568	(강)297.6㎡
변 경	녹지	서초구 양재동 288 일대	196,270.4	주택가 진입로 녹지계획(8개소)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연번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m)	시	점	중	점	비	고
1	결정	소로	2	8	310	서초구 서초동 1738-2	서초구 서초동 1738-12	서초구 서초동 1738-12	서초동	경부고속도로변 부책도로 신설	
2	·	·	1	10	750	서초구 양재동 100	서초구 양재동 227-2	서초구 양재동	양재동	·	
3	·	·	3	6	5	서초구 양재동 284-9	대로 2-3	대로 2-3	·	주백가 진입로 (녹지→도로)	
4	·	·	3	6	5	서초구 양재동 284-10	·	·	·	·	
5	·	·	1	10	5	서초구 양재동 283-6	·	·	·	·	
6	·	·	3	6	5	서초구 양재동 285-6	·	·	·	·	
7	·	·	3	6	5	서초구 양재동 390-22	·	·	·	·	
8	·	·	3	6	10	서초구 양재동 349-29	·	·	·	·	
9	·	·	3	6	2	서초구 양재동 310-18	·	·	·	·	
10	·	·	3	6	10	서초구 양재동 310-17	·	·	·	·	

3) 관계도면 : 공람장소 배치도면과 같음.

실사업자를 등록할소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초구공고제1997-49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소처분(자진반납)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에 의하여 주택건설

1997. 2. 26

서 초 구 청 장

가. 자진반납 업체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제 지	자 본 금	비 고
1	94-22-27	서신주택	이인호 김형극	서초구 서초동 1488-9 상가 201호	23억5천만	

사업소고시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7. 2. 28

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7-15호

하천정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정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연월일	위 치	지 목	검용면적 (㎡)	검용목적	검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 소
1997. 2. 19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704-6선	하천	780	원드서광 혼전장	1997. 1. 1~ 1997. 12. 31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704-6선	한국사회체육원드씨필연합회장 전순구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7-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7. 2. 28
한강관리사업소장

연월일	위 치	지 목	검용면적 (㎡)	검용목적	검용기간	승인을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7. 2. 19	서울특별시 강진구 자양동 427-7선	하천	3,988.2	유선장 부대시설	97. 3. 1~ 97. 12.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을현동 194-1	지승삼

인사발령

5급이상 공무원 진보
발령 제90호(1997. 2. 20)
의약과 의료관리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양인승 내무국(경무부시장실 근무)
서울특별시장

별시 동경사무소 파견(97. 3. 1~98. 3. 31)
서울특별시장

기술5급 공무원 검직발령
발령 제53호
의약과 약무계장 지방약무사무관 권오균 의약과 의료관리계장 검직(97. 2. 20~별도 명령시까지)
서울특별시장

기능직 공무원 진출·일
발령 제91호(1997. 2. 20)
노원구 지방안전원 9등급 정운선 서울특별시전업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지방안전원 9등급 송영철 노원구 진출
서울특별시장

행정6급 공무원 파견(연장)
발령 제92호
국제교류과 지방행정주사 임수근 서울특별시